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6

제출년월일 : 2015. 4. .

제 출 자: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의회의 추천으로 위촉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군수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함.
-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군수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 다.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9조)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등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정함.

- 라.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제13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평가의 계획에 대한 수립 시기 및 수립내용을 정함.
 -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발췌 첨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5.1.29 ~ 15.2.22)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저촉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결과 반영(조건부 동의)
 - 안 제6조제5항제3호의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업의 위탁 또는 축소 등 여건 변화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계약변경 필요사유를 구체화 함.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평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군수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정부·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 3. 사업의 위탁 또는 축소 등 여건 변화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허가 취소
 -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전년도 예산서
 -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참석수당

○ 관련조문 : 조례 제11조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참석수당으로 그 비용이 연 1백만원 이하로 추계되어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 하 진
연락처	(033) 330 - 2206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 3. 전년도 결산서
-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